

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35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1.

발 의 자 : 김은영 의원

1. 수정이유

- 개정 조례안 중 청소년참여 위원회 위원의 경우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, 청소년참여 위원회의 상위법인 「청소년 기본법」의 입법 취지에 따른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, 연임 위원에 대한 전체 구성위원의 범위 규정 신설 (안 제21조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다만,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% 내외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1조(임기)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<u>한 차례</u>만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21조(임기) ----- ----- ----- <u>두 차례</u>----- -----.</p>	<p>제21조(임기) ----- ----- ----- <u>두 차례</u>----- ----- <u>다만,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% 내외로 한다.</u></p>
<p>제26조(수상부문)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대상 1명,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6조(수상부문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참여부문</u></p>	<p>제26조(수상부문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9. 개정안과 같음</p>